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4:00 ~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최,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EJU SOCIAL ECONOMY CENTER

진행일정

순서	시간	비고
국민의례/ 내빈소개	14:00 ~ 14:05	사회자
인사말/ 격려의말	14:05 ~ 14: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주연구원장
주제발표	14:15 ~ 15:15	• 사회적농업 동향과 정책방향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지역 사회적농업사례: 결혼이주여성의 아열대채소 재배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홍창욱(공심채농업회사법인 대표)
좌장	15:20 ~ 16:20	강철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정토론		정민철(협동농장젊은협업농장 이사) 황석규(제주사회적농업연구원 설립추진위원장) 강종우(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안경아(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우철(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국장)
자유토론	16:20 ~ 17:00	자유토론

사회적농업 동향과 정책 방향

김 정 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농업의 동향과 정책 방향[1)]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외국에서도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관련 정책은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먹거리 보장 및 영양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에서는 2014년에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그 전에는 유럽연합(EU)에서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 그때에야 비로소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그 연구 보고서는 사회적 농업을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 그 징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게 2012년 무렵이고, 국내 학술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 2013년이다. 수년 전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care farming)'[3)] 실천이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2016년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치유형 농업체험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회적 농업이 농정의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고 보면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기획이 아주 급작스러운 것은 아닌 듯하다.

근래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형성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농업 부문 안팎에서 다기능 농업을 펼칠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농정 패러다임 전환론'이 제기되었다. 다기능 농업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생소한 실천이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 뒤에는 한국에서도 농업의 경제적·환경적 위기와 더불어 '삼중 위기'를 구성하는 농업의 사회적 위기가 닥쳐왔다는 인식이 있다.

둘째,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4)]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 농업 부문에

1) 이 글은 강의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김정섭 외, 2017)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옮겨왔다. 이 글에 나오지 않는 보다 상세한 자료, 가령 외국의 관련 법제나 지원 정책 등에 관해서는 상기 보고서를 참고.

2) 그 연구 결과는 "유럽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3) 후술하겠지만, 돌봄 농업은 사회적 농업의 여러 유형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 'social inclusion'의 번역 용례들이 몇 개 있다. 사회 통합, 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함 등의 번역어가 있는데 제각기 고유한 말맛을 지닌다. 광범위하게 합의된 번역어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통합'이라는 용례를 따른다.

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사회 통합 그 자체를 명시적 목표로 삼은 정책의 사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정책을 들 수 있다.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 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드물지만,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청년 구직자에게 농업을 가르쳐 자영농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돕는 취지의 직업교육훈련농장(vocational training farm)도 생겨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실천과 정책이 확산되면서 농업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접촉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및 사회 통합이라는 지역 수준의 이해관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형식으로 사회적 농업 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의 배경에 사회적 경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의 밀도가 관심과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 듯하다. 국내의 몇 안 되는 관련 연구는 대부분 외국 정책이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이다.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을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 사회적 농업 담론과 실천은 이제 겨우 맹아(萌芽)를 보인 상태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은 실증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천의 규범적 지향이라고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 그만큼 실천과 담론이 박약하다.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려는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기 전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이 어떤 것이며(혹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책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사회적'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농업 활동을 원자화된 개인들(atomized individuals)의 전략적 행위로만 이해하지 말고 사회의 연대(solidarity)를 가능케 하는 '서로를 이어주는 매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하자는 두루뭉술한 취지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사회적이지 않은 농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쓸 때 '사회적'이라는 관형어의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논의의 근본 목적이자 정책 방향 설정의 토대가 될 터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개념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논의보다 앞서서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현실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농업의 의의(意義)는 무엇인가? 사회적 농업을 정책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관련 정책을 준비한다면 우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올라섰다.

2. 사회적 농업의 개념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다. 주로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활발했던 사회적 협동조합 실천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이탈리아 농촌 지역에 57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런 실천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된 일종의 운동이었는데,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의 목표를 사회적 목적(social ends)에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다기능 농업 활동을 강조하려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퍼져나갔다.[5)]

이처럼 현존하는 다양한 실천에서 드러나는 공통 경향을 포착해 표현하고자 '사회적 농업'이

라는 용어가 쓰인다. 이때의 공통 경향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농업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개념은 경험적 현실 맥락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특정 유형의 실천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몇몇 문헌에서 '사회적 농업' 개념을 정의하거나 기술(記述)한 부분을 〈표 1〉에 옮겼다.

〈표 1〉 선행 연구들의 '사회적 농업' 개념 서술

구분	내용
Iacovo (2009: 11)	*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
Iacoco & O'Connor (2009)	*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이라는 두 개념에 기초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local)의 복지 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Hassink (2009: 21)	*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사회적/건강 돌봄이라는 두 개념 안에서 시도되는 혁신적인 접근방법 * 농촌 지역세서 사회 서비스를 촉진하려고(또는 만들어내려고) 동식물 모두를 포함해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 * 예: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에 기여하는 재활, 치료, 보호작업장,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
Fazzi (2011: 123)	* 돌봄 및 사회-재활 통합 *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노동 통합(즉, 고용)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교육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및 일반 공중(public)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촉진하려고 적절한 환경을 만드든 데 농업자원(동물 및 식물)을 활용하는 일련의 실천 * 특별한 요구(needs)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과 웰빙 증진을 위해 일상적인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실천에 기반해야 함
Chovanec, Hudcová, & Moudr□ (2015: 6)	* 사회적 농업은 광범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지만, 언제나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공통 요소를 지닌다. - 영농활동 또는 농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활동 -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특수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활동 * 사회적 농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특수한 요구를 지닌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합 - 전문적인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의 재활 및 치료, 취업 준비 - 농업활동, 농촌 문화, 경관 관리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더 나은 지식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등의 활동
Assouline (2015)	*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대해 사회통합, 노동통합, 치료적 동반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물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Crowley, O'Sullivan, & O'Keeffe (2017: 7)	* 장애, 질병, 연령, 중독,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risk)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건강, 사회, 교육, 직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작동 중인 농장에서 경관이나 영농활동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가축, 원예, 작물, 농기계, 숲 등과 결부된 영농-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촉진하며, 감독한다.

이상의 개념 정의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회적 농업 담론과 정책 관심이 출현한 배경에 농업과 사회 사이

5) 네덜란드에서 돌봄 농업(care farming) 또는 녹색 돌봄(green car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들 용어의 의미론적 외연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보다 협소하다.

의 이격(離隔)[6]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려는 모든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개념화할 수는 없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게 된 배경에는 학술적 논의가 빈곤한 가운데 발생한 약간의 오해도 작용했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 전개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그대로 '사회적 농업'으로 오인하여 소개한 신문기사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영역을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이라는 말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7]를 경험하는 이들의 통합(inclusion)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규범적 지향이 공통되게 드러난다.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사회'는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

이제 잠정적으로나마 사회적 농업 개념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를 수 있다. 유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참조하면, 한국에서도 최소한 세 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이다.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실천이다. 둘째는 돌봄 사회적 농업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이다. 셋째는 직업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이다. 직업이 필요하지만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이다. 물론, 이 같은 실천 유형 구분은 분석적 차원의 구분이다. 현실에서는 둘 이상의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여지도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재활(rehabilitation)을 추구할 때 노동통합과 돌봄을 위한 농업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통합,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세 영역 외에도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6) 농업·농촌에 대한 친숙함과 공감이 줄어들면 우호적인 입장도 줄어든다. '농업·농촌 정책을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설문에 대한 도시민의 우호적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흔히 거론되는 사례다.

7)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주 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친다. Burchardt 등(1999: 229)은 "(1) 한 개인이 사회 속에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2)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3) 그렇게 참여할 의지도 없을 때, 그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정의한다. Barry(2002: 16)는 "개인이나 집단이 참여하려는 바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참여 기회를 부정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정의한다. Shucksmith와 Chapman(1998: 230)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특정한 이들이 자원(또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 다수 구성원이 누리는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없는 무력함을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빈곤은 일종의 결과물이다. 사회적 배제란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적 통합(inclusion)을 보장해야 할 사회 내 주요 체계의 붕괴 또는 기능 장애를 말한다. 이는 '희생자'뿐만 아니라 '체계의 실패(system failure)'에도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8) Iacoco & O'Connor(2009)와 Hassink(2009: 21)의 정의를 참고.

3. 사회적 농업 실천의 성격: 사회적 경제와 사회 혁신

아직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 사례들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는 특징은 이들 실천이 그저 '선한 의도를 지닌 몇몇 농민이나 사회복지 실천가의 개별적인 자선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의 뜻은 명확하다. 그것은 연대(solidarity)를 뜻한다. 정신적□신체적 장애, 질병, 빈곤,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등의 측면에서 남들과 달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는 차이-개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대등하게 인정받는 셈이다. 농업 실천도 그 같은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농업은 '개성화된 그리고 자율적인 주체들 사이의 대등한 가치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의 전제인 사회적 연대'(악셀 호네트, 2011: 248)를 실현하는 농업이다. 이처럼, 연대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시하는 열쇳말이자 동의어다. '연대-사회적 인정'이 사회적 농업의 지향점이라고 보면, 시설 수용은 재활이 아니고 자선(慈善)은 아직 연대가 아니듯, 돌봄 농업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농업 실천 그 자체는 아직 충분히 사회적일 수 없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향하는 '연대'라는 가치는 유럽의 사례에서 그렇듯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주체들, 특히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 부문 행위자를 포함한 주체들 사이의 협동이라는 형식으로 구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 혁신이라는 과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와 연관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의 기원이 이탈리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80년대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에서 출현했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도시 사람들의 치료적 필요(needs)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녹색 돌봄(green care)을 실천했던 일련의 집단들이 있었다. 이들이 2000년대 들어서는 농촌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녹색 돌봄을 바라보던 도구적 접근방법을 버리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엔진으로서 농촌 지역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역의 농업 생산자들과 혁신적인 형태의 협력을 취하기 시작했다."(Fazzi, 2010: 119).

이탈리아는 특히 제3섹터가 복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 제3섹터는 대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라는 조직 형식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9]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말하자면 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이탈리아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탁받은 수동적인 행위자인 게 아니라, 자생적인 다중이해당사자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될 때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의 조직이 공공 부문의 복지 서비스 전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무렵에 촉발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협동조합, 즉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로부터 탈맥락화하였고,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하여 각기 이윤 최적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재맥락화"(김형용, 2013: 172, 김정섭□조미형, 2013: 13에서 재인용)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료제화를 저지하고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의 품으로 되찾아올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런 종류의 실험은 더디지만 한국 농촌

9) 이탈리아 농촌의 사회적 협동조합들, 특히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Fazzi(2010)을 참고.

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 농업 실천과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회복지기관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조합원으로서도 참여할 수도 있다. 혹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가져 왔다. 보유한 자원과 필요로 하는 자원이 각각 다른 조직들이 각자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고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조직 간 네트워크'에는 호혜성, 상호의존성, 느슨한 연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인 목표하에 자발적으로 각 조직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곧 지역사회 네트워킹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관점을 갖고 주민들 간의 신뢰를 토대로 상호호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개념과 함께 접근하는 사회 연결망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김정섭·조미형(2013: 19).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을 맺는 지점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농촌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탈리아와는 달리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농촌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등이 능동적으로 관여할 만한 제도적 바탕이 없는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가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재무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회적 농장은, 자신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의 대가 지불 메커니즘이 없다면, 그 자체적으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농장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돌봄'과 '교육'이다. 이 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만큼 농장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10]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 메커니즘이 두텁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농장은 스스로의 농업 활동으로 경영수지를 맞춰야 지속할 수 있다. 이때 관건이 되는 것은 생산물 판매다. 그래서 우선구매 등의 보호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사회적 경제 관련 논의들에서 여러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오내원 외, 2010: 181; 임준홍 외, 2011: 263). 부분적으로나마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지방정부의 우선구매 등 공공조달 시장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도 있다(김정섭 외, 2015: 135). 한국에서 농산물 공공 조달 시장으로는 학교, 국공립병의원, 군대 등의 급식 시장이 대표적일 듯하다. 물론, 공공 조달 시장이 보호시장의 전부는 아니다. 민간 농산물 시장 중에서도 보호시장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출현하고 있다. 가령, 로컬푸드 시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두 개의 사회적 농장 '행복농장'[11]과 '젊은협업농장'은 다른 농민 협동조직(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함으로써 농장 생산물 판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판로 측면에서 이 두 사회적 농장이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맺은 관계는 경영상 수위를 다투는 자산 혹은 가장 중요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홍성유기농영농조

10) 가령, '행복농장'의 경험을 들자면, 만성 정신질환자 수 명과 함께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에는 통상적인 속도의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오히려 농장의 상근 직원이 농작업 대신 모니터링과 돌봄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농업 직업교육을 실행하는 '젊은협업농장'도 마찬가지다.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농장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을 수가 없다. 농업 교육훈련은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즉 생산성이 떨어지는 활동을 어느 정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농장은 그런 과정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1) 굳이 분류하자면, 행복농장은 돌봄 농업을 젊은협업농장은 교육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들이다.

합법인은, 농협을 제외하면, 장곡면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조직일 듯하다. 87명의 농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다양한 품목을 두레생협과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판매한다.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 모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출하자로서 참여한다. 앞에서 살펴본 '꿈이자라는뜰', '여민동락 공동체', '교남어유지동산' 등의 사례들도 모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에 준하는 조직의 형식으로 맺어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의 연결망 구조 속에서 산출물 관계를 매개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도 지역의 학교급식시장에 진출해 있고, 출하 관계망 속에 완주군 내의 자활공동체, 결혼이민여성들의 농식품 가공업체, 영세 고령농 생산자 모임인 두레농장 등을 통합·연대하고 있다.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국내외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들 대부분 농민만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직능이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한 사례들이 많다. 달리 표현하자면, 농촌 거버넌스(governance)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역할을 달리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형성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 같은 새로운 관계 형성, 즉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의 구조를 무엇보다 농촌 지역사회 수준에서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 혁신은 "목적과 수단 두 측면에서 모두 사회적인 혁신이다. 특히, 우리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 또는 협력을 만들어내는 신선한 발상이 바로 사회 혁신이라고 정의한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 혁신은 사회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행동 능력을 향상시킨다."[12]

그림 1. 기로에 놓인 사회적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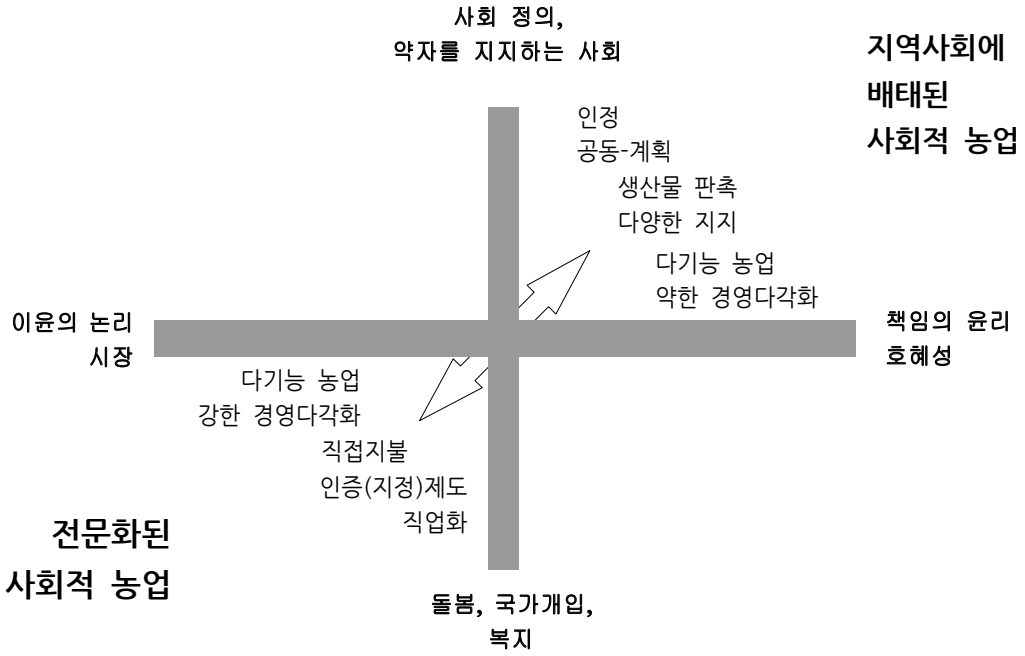

자료: Iacovo(2010: 6).

12) EU Commission(2013), 39쪽.

한국에 널리 알려진 사회적 농업 실언은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이다. 정신적·신체적 약자에게 농장 환경 안에서 농업 활동의 치료적 요인이 결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이다.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은 근년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회보험제도 안에 편입된 적도 있다. 즉, 농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적 성격의 보험제도 체계에서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메커니즘을 정부가 마련했던 것이다.[13] 농장이 일종의 돌봄 기관으로 공식 지정(accreditation)을 받은 것이다.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을 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제도는 그 자체로 참고할 만한 점이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 따라 하기는 어렵다.[14] 게다가 '개별 사회적 농장이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조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된다면,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성격이 희석될 개연성마저 엿보인다.

사회적 농업을 농장에서 실행하는 돌봄 프로그램 정도로 치환한다면,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혁신적 의미를 방기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 실천인 동시에 사회 혁신의 중요한 사례다. 막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그리고 관련 정책은 출발점부터 기로에 놓인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에 스며든 사회적 농업'과 '전문화된 사회적 농업(치유농업?)'이라는 두 가지 길이 펼쳐질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쩌면 매사가 그렇듯이, 어느 한쪽이 아닌 장자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견 한국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자생적 실천이 조직·개인·기관 간 연대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늘 그랬지만, 연대는 사회의 속성이다.

4.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유럽의 농촌 지역에서는 장애인, 미성년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지역사회에 통합시켰다. 사회 연대, 사회 부조, 사회 통합에 기반을 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실천이었으며, 사회적 농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Iacovo & O' Connor, 2009: 11). 이 같은 선구적 실천에 정책 함의가 부가된 데에는 두 종류의 계기가 있었다. 다기능 농업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와 복지 국가 체계(welfare state system)의 변동 조짐이다. 그런 배경에서 사회적 농업은 일반적으로 고용,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농업에 주목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농업인, 사회복지 관련 행위자(조직), 공공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일본에서는 '농복연계'라는 표현을 쓴다. 유럽의 사회적 농업과 비슷하게 고용 기회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장애인, 빈곤 계층 등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여 이들의 사회 통합을 추

13) 최근에는 제도를 개편해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보조금 성격의 급여를 제공한다. 그렇게 제도를 바꾼 배경은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회보험제도 체계의 비용 부담 문제와 지역사회(community)의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관점이 다소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14)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올 7월까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핵심은 정신병원, 요양원 등의 각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밖으로 보내고 지역사회가 돌보게끔 돌봄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같은 정책 구상이 현실로 옮겨질 경우, 농촌에서는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의 소일거리, 돌봄,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이 시작되던 때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구하는 수단으로서 주목받는다. 또한 심각한 고령화로 야기되는 농촌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실천으로 이해되며,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사회 활동에 참여시키는 데에 농업 활동을 활용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 사회 문제[15]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것은 유럽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기획의 일종으로도 이해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혁신 정책을 강조해 온 유럽연합의 정책 자문기구가 정의한 사회혁신은 다음과 같다. "사회혁신이란, 과정 측면에서는 사회 문제(issue)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나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고(과정 측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결과 측면)을 말한다. 종래의 시장이나 기성 제도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회 안의 취약한 집단(vulnerable groups)에 관심을 둔다.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사회적인 도전에 대응하면서, 전체 사회를 지향한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학습이 웰빙(well-being)의 원천이자 결과물이 되는 더욱 참여적인 영역을 향해 사회가 나아가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에 부응한다."(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2011: 43).

가. 다양한 실천[16]

유럽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목적, 운영 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그림 3-1).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별로 문화, 사회 구조,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전 경로와 주요 실천 유형이 다르다.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 녹색 돌봄,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목적에 따라 실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이때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Iacovo & O' Connor, 2009: 35).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농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보건복지 기관에서 농업 활동을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농장이나 단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며 농업 생산과 관련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다(Iacovo &

15) Iacovo는 사회적 농업이 농촌의 사회혁신 기획의 일종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농촌에서 사회혁신으로 대응해야 할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농촌 지역은 자원 고갈 심화,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 인구 변동,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금 부족 등으로부터 촉발되는 긴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고 유럽연합은 사회혁신과 체제 이행(transition)에 초점을 맞추어왔다."(Iacovo 외, 2014: 344).

16) SoFar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 내용(Iacovo & O'Connor, 2009: 35-40), 유럽의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현지 조사 자료, 유럽의 사회적 농업을 소개한 선행 연구들, 일본의 '농복연계 사업'에 대한 정부 안내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요약하고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SoFar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는 유럽 연합에서 지원한 SoFar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SoFar 프로젝트는 사회적 농업의 새로운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7개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국가별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과 유형을 연구하여 유럽에서의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수행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3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국가별 보고서 등의 연구 결과물은 웹사이트<http://sofar.unipi.it/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O’ Connor, 2009: 36). 오히려 국가나 이용자 개인이 농장이나 단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불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지방의 돌봄 농장,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therapeutic farm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A 유형이 그 사례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국가들 대부분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공 기관이 돌봄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는 사례는 빈번하다(Iacovo & O’ Connor, 2009: 36).

〈그림 2〉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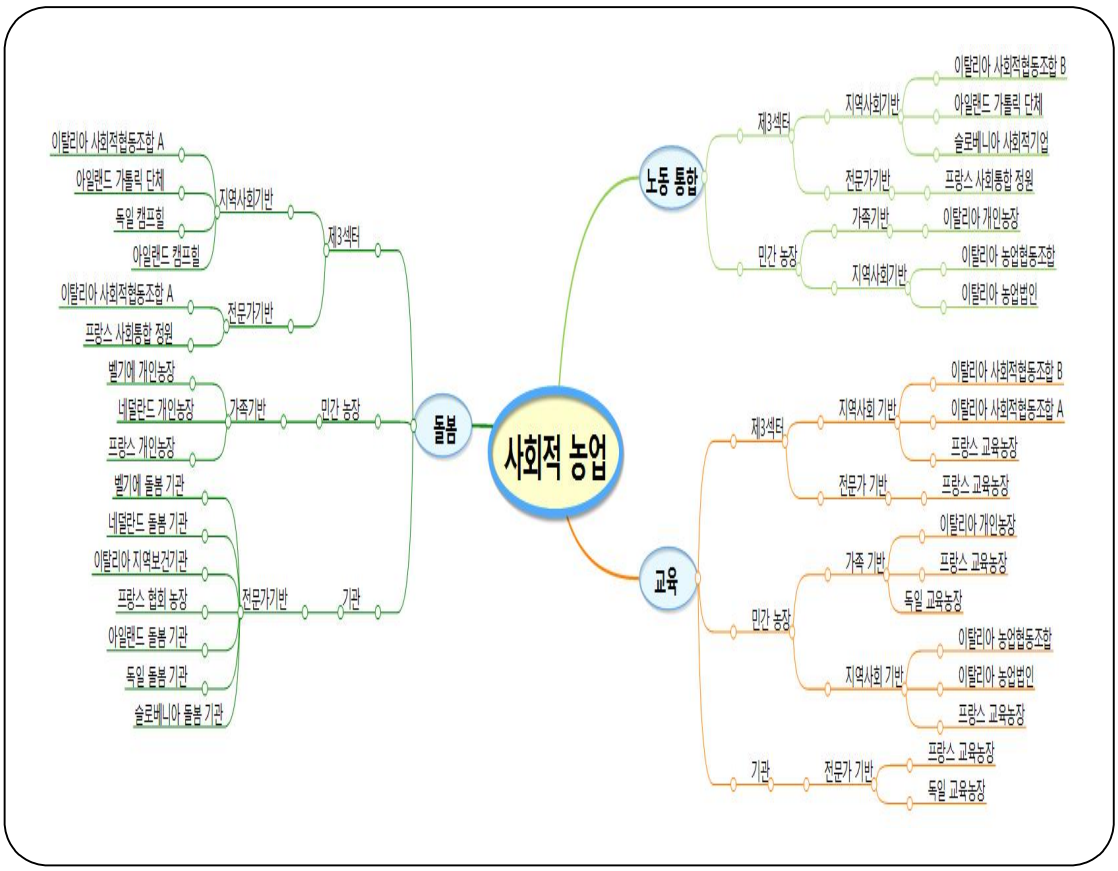

자료: 이정해(2017: 1)

둘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고용주가 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거나 직업 연수생으로 받아들이고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의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 계약을 맺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다(Iacovo & O’ Connor, 2009: 36). 프랑스의 사회통합 농원(social inclusion garden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교육 기관이 된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농장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Iacovo & O’ Connor, 2009: 36). 학습 장애 아동과 학교 생활 부적응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프랑스의 교육 농장(ferme pédagogique)과 독일의 학교 농장(school farms)이 활성화되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육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실천 조직의 형태나 구성원 등 운영 주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회적 농업의 다양한 실천을 살펴볼 수 있다. 실천 조직의 형태는 제3섹터, 민간 농장, 공공 기관으로 나뉜다(Iacovo & O' Connor, 2009: 37). 제3섹터 조직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종교 및 자선 단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이 농장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제3섹터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Iacovo & O' Connor, 2009: 37).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과 재활 치료 농장, 독일의 보호 작업장,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간 농장에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농가, 농업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생산 활동에 고용하는 실천이 주를 이룬다. 주간보호 성격의 돌봄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돌봄 농장, 이탈리아의 민간 농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 또는 교육 관련 공공 기관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이 대표적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공공 기관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실천 조직의 구성원 특성에 따라 실천 유형을 가족 기반, 지역사회 기반, 전문가 기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Iacovo & O' Connor, 2009: 38). 가족 기반 사회적 농업이란 가족농이 종교, 자선, 소득 다각화 등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실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네덜란드, 벨기에의 돌봄 농장이 전형적인 가족 기반 실천 유형이다(Iacovo & O' Connor, 2009: 39).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이란 종교와 사회 이념 등에서 공통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직을 이뤄 실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캠프힐(Camphill)[17]이나 종교 단체가 주도하는 독일과 아일랜드의 사례,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가 기반 사회적 농업은 돌봄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실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운영 주체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실천 유형이 다양하며, '농복연계'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주로 장애인, 고령자, 빈곤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활동을 통해 이들을 고용하거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실천이 주를 이룬다. 농업법인, 일반 농가, NPO 법인, 사회복지 기관, 지방정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1) 이탈리아[18]

1970년대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17) 인지학적인 관점에서 지적·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공동체 내에서는 교육, 고용 등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체에 속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20여개 이상의 국가에 100개 이상의 캠프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위키피디아: 2017. 9. 12, <https://en.wikipedia.org/wiki/Camphill_Movement>.).

18)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내용은 Iacovo & O'Connor(2009), Iacovo & Peroni(2006), EC(2010), 이탈리아 농림부에서 작성한 정부 문건인 Mipaaf(2015a), Mipaaf(2015b), 2017년 2월 이탈리아 해외출장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보건복지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Ferre 외(2014)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못하였다. 1978년에는 정신병원을 폐쇄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 치료, 돌봄 서비스 등의 책임을 주 정부(regional governments)[19]로 이양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이 방치되자, 일부 뜻 있는 개인이나 지역사회 조직이 농업 활동에 그들을 고용하고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 들어 이탈리아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을 탈피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8년 이후부터 이미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주 정부, 꼬뮤네 등의 지역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다수가 협동조합 형태였다. 정부는 기존의 민관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지위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을 제정하였다. 이때부터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 공공 기관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돌봄과 교육 서비스(재가 복지, 주간보호센터, 요양 시설, 아동 돌봄 시설 등)를 제공하는 A유형과 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동 통합을 지원하는 B유형이 있다. B유형은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도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의 조합원은 돌봄 및 교육 전문가 직원, 자원 봉사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다. 사회적 협동조합 B 유형은 일반 직원, 취약 계층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B유형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취약 계층이어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2~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 한다. 최근에는 민간 농장(농업 협동조합, 농업 법인, 개인 농장)의 실천 사례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의 보건복지 기관, 교도소, 농업 기술 보급 기관 등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농장과 협력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직업 재활 치료 대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의 농장이나 민간 농장에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교육생으로 받는다. 교육생은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다. 돌봄 서비스, 직업 재활 치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사회적

19) 이탈리아는 21개의 주(regione) 정부(2개의 자치주 정부 포함)와 그 아래에 14개 광역도시(citta metroplitane), 97개 도(provincia)를 두고 있다. 광역도시와 도는 7,978개의 꼬뮤네(commune, 평균 인구: 7,604명)로 구성된다(Istat: 2017. 7. 23, <https://www.istat.it/en>.). 이탈리아는 지방 분권국가다. 지방 정부가 보건복지,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자치권이 강하다.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원받는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농촌관광 사업을 하거나 농장의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농업 활동을 매개로 아동 돌봄 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그림 3〉 이탈리아의 운영 조직 유형별 사회적 농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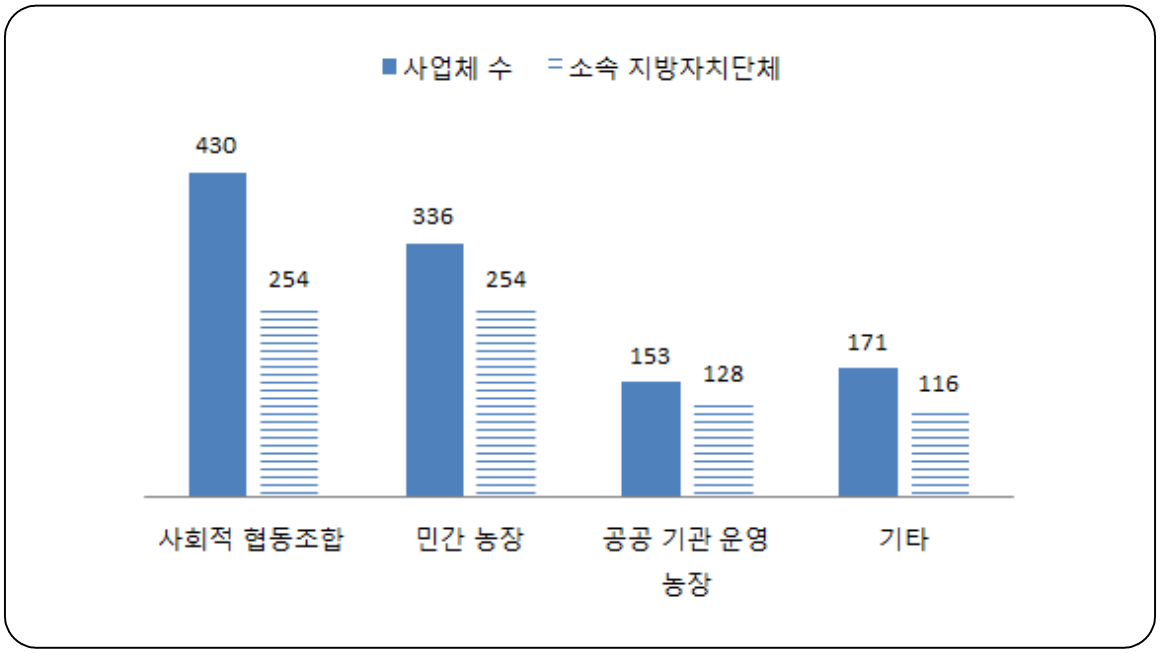

자료: Miaaf(2015a).

2015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례는 1,090 개로 추정되며, 이중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40%, 민간 농장이 31%이다. 또한, CREA[20]에서 수행한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21]에 따르면 고용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사례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시작한 사례가 30%로 최근 사회적 농업 실천이 민간 농장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이탈리아 중앙 정부 출연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 기관
21) 300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에 208개 사례가 응답하였다.

〈글상자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사례 농장은 로마 근교에 있다. 1978년에 지역 내 장애인 복지 기관의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으며 A, B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원은 농업인,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원예 치료사, 요리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전체 직원 수는 약 50명이다. 상주 직원이 10명이고 조합원은 38명이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등의 취약 계층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취약 계층은 농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이 있으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조합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직업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된다. 약 30명의 지역 내 청년 자원 봉사자들도 협동조합의 농업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한다. 농장 부지의 대부분은 국유지를 임차한 것이다. 일부 건물 및 토지는 지역의 수녀원에서 기부하였다.

농장은 채소와 과일을 주로 생산한다.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와인, 올리브 오일, 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로마 시내와 농장에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와인, 올리브 오일 등의 상품은 전문 중개인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판매한다.

고용된 약물 중독자,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 계층은 보통 농업 활동을 보조한다. 노동 역량이 부족하거나 농업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일을 돕는다. 지역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3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 미술, 음악,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발달 장애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합원인 정신과 의사 2명과 원예 치료사 1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료: 2017년 2월 이탈리아 출장에서 방문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웹사이트(www.agricolturacapodarco.i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네덜란드[22]

1990년대 중반까지는 소수의 민간 농장이 종교 및 자선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회적 농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던 민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앙 정부 관계자, 농업인, 사회적 농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 수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농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 부처가 사회적 농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농업부는 집약적 농업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 계층을 사회에서 격리하

22) 네덜란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내용은 Iacovo & O'Connor(2009), Jan Hassink(2007), EC(2010), 네덜란드 농업·건강 연맹 웹사이트(www.landbouwzorg.nl), 2017년 2월 네덜란드 출장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보건복지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Kroenman 외(2014)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여 폐쇄적인 기관에서 돌보던 것을 사회 통합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려고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 사이에 연결망(network)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많은 농장들이 전문화되어 국가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전문화된 농장을 돌봄 농장이라 부른다. 대부분 축산업과 원예업에 종사하는 가족 기반의 민간 농장이다.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하루 20~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부터, 농업 활동을 주로 하면서 소수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까지 서비스 제공 수준은 다양하다. 대부분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경증 치매 노인, 장기 실업자, 번아웃 증후군 환자,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등 서비스 대상 집단이 다양하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돌봄 농장이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돌봄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돌봄 기관은 기관 이용자들에게 농업 활동을 일과(日課)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선별하여 돌봄 농장에 보낸다. 돌봄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농장에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글상자 2〉 네덜란드 돌봄 농장: 파라다이스(Het Paradijs)

사례 농장은 네덜란드 동부의 바르네벨트 근교에 있다. 2006년에 돌봄 농장으로 설립하였다. 개인 소유의 민간 농장으로 처음에는 농장주와 부인 둘이서 시작하였다. 현재는 농업인, 사회복지사, 예술 치료사, 교육 전문가, 환경 교육 전문가, 간호사, 아동 상담사, 관계 치료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 23명이 있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한 인력이 전체 직원의 약 60%다.

소, 닭, 돼지, 말 등의 가축을 기르며, 고기와 달걀을 생산한다. 말은 자폐 아동의 승마 체험 활동에 사용된다. 채소와 과일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계절과 상관없이 농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리 온실도 갖췄다. 농산물이 농장의 주요 수익원이다. 최근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 단가가 떨어져 농업 활동의 비중을 높이려고 닭과 돼지의 숫자를 늘렸다.

돌봄 서비스 제공은 경증 치매 노인, 자폐 아동, 정신질환자, 번아웃 환자, 지적·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하루 평균 20~25명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중 90%는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제공한다.

경증 치매 노인들은 농장에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농업 활동, 달걀 포장, 하이킹, 수공예, 목공 활동 등에 참여한다. 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보조한다. 접근성을 높이려고 농장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정신질환자와 번아웃 환자는 농업 활동, 농장 가게 운영 보조 등에 참여한다. 농업인, 사회복지사, 활동관리자, 간호사가 보조하며 개인별 대화 상담도 진행한다.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요일별,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물 돌보기, 원예 활동, 농업 활동 등에 참여하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자료: 2017년 2월 네덜란드 출장에서 방문한 돌봄 농장 경영자와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웹사이트(http://hetparadijs.ne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두 번째는 돌봄 농장이 현금 급여 수령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 중 일부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돌봄 농장은 현금 급여 수령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에서 장기요양 돌봄 기관으로 인정한 돌봄 농장 지역협회[23]가 국가에서 지정한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협회에 소속된 돌봄 농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는 돌봄 농장이 지방정부[24]와 계약을 맺고 지방정부나 청소년복지국(Youth Welfare Office)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지방정부가 서비스 대상자의 선호도와 상태를 고려하여 돌봄 농장과 이들을 연결해 준다.

다섯 번째는 돌봄 농장 이외의 돌봄 기관이나 주간 보호 센터가 농장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농업 활동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1998년에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돌봄 농장의 수는 75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국가 지원이 늘어나고 돌봄 농장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돌봄 농장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보건복지 제도가 재편되었다. 그러면서 돌봄 농장의 수가 급증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전역에 1200~1400개의 돌봄 농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벨기에 플란더스[25]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26]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뜻이 있는 농장에서 농업 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가족 기반의 민간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 주로 소수의 인원(1~3명)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일과 시간 동안 농장의 일상적인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장애 아동, 학습 장애 학생,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들어 이 같은 실천 유형이 등장하였다. 벨기에에서는 이를 두고 '녹색 돌봄'이라 부른다.

가장 흔하게는, 지역의 돌봄 기관과 민간 농장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된다. 농장은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 시설 등 돌봄 기관과 1:1로 관계를 맺는다. 돌봄 기관은 농장에 1~2명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보내고, 이들은 농장에서 일과 시간 동안 일상적인 농업 활동을 수행한다. 기관은 관리 대상자들이 농장에서 이상 없이 지내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고 농업 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많은 농장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돌봄 기관이 민간 농장의 장소를 활용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농장은 장소만 제공하고 프로그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돌봄 기관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에서

---

23) 2000년대 초반에 돌봄 농장들이 정식적으로 돌봄 기관으로 인정받으려고 조직한 민간 단체다. 전국에 총 6개가 있다. 재단,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2017년 2월 네덜란드 출장에서 방문한 돌봄 농장의 경영주와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내용).

24) 네덜란드는 12개 주와 그 아래에 388개의 지방정부(gemeenten)가 있다. 지방정부(gemeenten)의 평균 인구는 약 40,000명이다.
(CIA 국별 정보 제공 웹사이트: 2017. 7. 2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l.html>

25) 벨기에 플란더스의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내용은 Iacovo & O'Connor(2009), Katrien & Joost(2007), EC(2010), 플란더스 녹색 돌봄 지원 센터 웹사이트(www.groenezorg.be)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6) 벨기에는 플란더스, 왈루니아, 브뤼셀 3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 체제다. 10개 도(province)와 그 아래에 589개의 꼬뮌(communesl)를 두고 있다. 꼬뮌의 평균 인구는 약 18,000명 수준이다(벨기에 공식 정보 제공 웹사이트: 2017. 7. 23, <www.belgium.be/en/about_belgium>).

직접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에 플란더스 지방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수는 46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되고 2004년부터 조력 기구인 플란더스 녹색 돌봄 지원 센터(Steunpunt Groene Zorg)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접 국가인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 확산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2016년에는 901호의 농가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의 사회적 농업 실천 농가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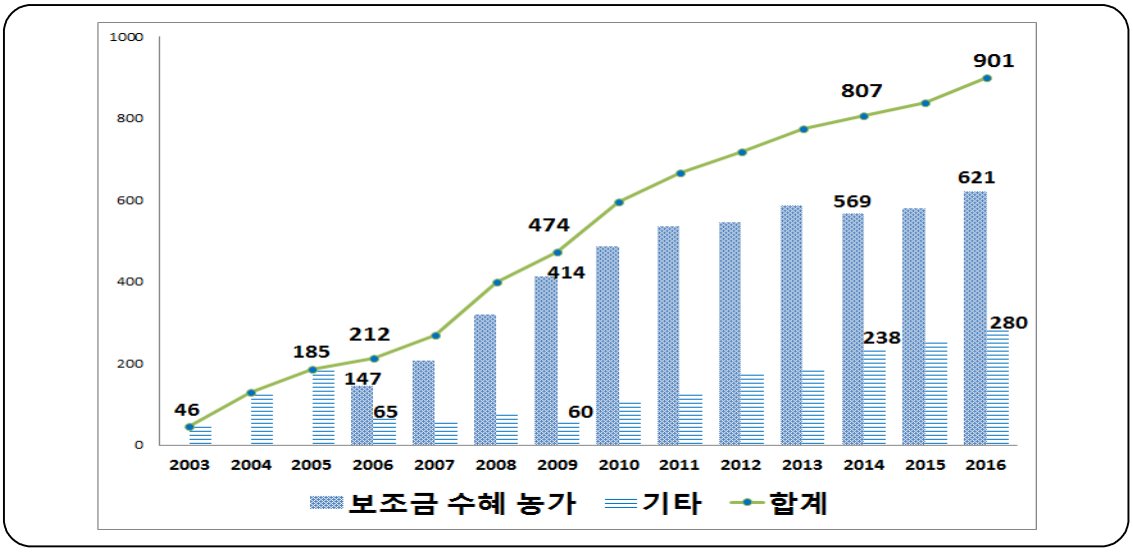

자료: Steunpunt Groene Zorg(2017).

〈글상자3〉 벨기에 돌봄 농장: 후버 더 플루흐(Hoeve de Ploeg)

농장은 1961년에 설립되었다. 가족 기반의 낙농 농가이다. 농장 설립자의 아들, 딸, 사촌, 사위 등 9명이 시간제로 농장에서 일한다. 70헥타르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년 평균 45만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 치즈, 버터, 요구르트를 가공하여 농장 가게에서 판매한다.

원래는 낙농업에 종사하는 보통의 농장이었으나, 2006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돌봄 농장이 되었다. 농장이 위치한 지역의 돌봄 기관(The Institution Martine van Camp)이 먼저 농장에 접촉하였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 아동들이 농장에 와서 일과 시간 동안 일상적인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기관은 사례 농장과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장애 아동 2명을 농장에 보낸다. 1명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을 앓는 아동으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수요일에 나와 송아지를 관리한다. 또 다른 1명은 자폐 아동으로 화요일에 나와 농장 가게에서 판매할 상품을 준비한다. 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생 지원 센터(The Centre for Assistance to Pupils, CAP)와도 관계를 맺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를 겪은 청소년 1명이 일주일에 3회 농장에 나와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자료: Iacovo & O'Connor(2009)에서 소개한 사례를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4) 일본[27]

27) 일본의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내용은 일본의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2017)에서 작성한 자료와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반 병원에서 농업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사회적 농업의 기원으로 본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원예 활동을 활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유행하였다. '원예요법', '원예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련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도 원예 활동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실천들이 축적되면서 2000년대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농업 활동을 활용해 재활 치료와 직업 교육을 수행하고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농업 법인 등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농촌 지역의 고령자,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농협, 사회복지 기관, NPO법인, 일반 농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아직까지 정형화되고 주된 실천 유형이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고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한다.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은 운영 주체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첫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이 일반 농가나 농업 법인 등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들을 농장에 고용시키는 유형이다. 장애인들은 농장에서 제초, 출하 준비, 모내기 등의 작업에 참여한다. 기관에서는 직원을 농장에 파견하여 장애인들을 관리하며, 작업 지시도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장은 계약을 맺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임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NPO법인 등이 직영 농장을 두고 농업 활동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특례자회사가 농업 활동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특례자회사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설립한 자회사이다. 일본 전역에 448개의 특례자회사가 있는데, 이중 36개가 농업 활동에 장애인을 고용한다(2016년 6월 기준). 네 번째는 농업 법인 등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헬로 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국가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취업 건수가 2,820건에 달했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농업 법인, NPO법인 등이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는 유형이다. 노인들은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는다.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들에게 제공된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정부가 농업 법인이나 NPO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여섯 번째는 농업 법인, NPO법인 등이 빈곤 계층을 고용하여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자립과 취농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할 농업 분야의 사업자와 참여할 교육생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전영현·임송수(2016)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글상자 4〉 일본의 농업 법인: ㈜사이타마홋코

사이타마홋코 농업 법인은 1996년에 설립되었다. 8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약 6헥타르의 경지와 시설 하우스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1993년 지역의 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장애인들과 농업 활동을 지속해오다, 1996년 기관의 성격을 사회복지 기관에서 농업 법인으로 전환하여 정식적으로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였다. 현재 직원 중 2명이 장애인으로 모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

432㎡의 하우스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시작하였고, 점차 규모를 늘려 1,080㎡규모의 시설 하우스에서 각종 작물을 수경으로 재배하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00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보유하고 있고,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올리브 오일이 이 법인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지역에서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며, 파종, 제초 작업, 가지치기, 출하 준비 등의 다양한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자료: 2017년 10월 일본 출장에서 방문한 농업 법인을 소개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나. 외국의 사회적 농장 지원 제도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정책 지원이 활발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정부가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충하여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는 국가도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농촌 지역의 사회 통합 그리고 농가의 다중경제활동 (pluriactivity)과 관련한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가별 농촌 개발 프로그램[28]을 수립할 때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분야가 돌봄, 고용, 교육 등으로 다양해 국가의 보건복지, 고용, 교육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할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여건을 갖추기까지 이를 지원하는 조직과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망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되는 나라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를 꼽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 제도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농업 지원과 관련한 법률도 따로 제정하였다. 네덜란드는 돌봄 농장을 여러 가지 돌봄 기관의 유형 중 하나로 간주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벨기에의 플란더스 지방은 정부의 농촌개발 예산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고용 정책의 틀 안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시설 정비, 임금 지원, 인력 및 기술 지원, 직업 교육, 연수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28) 유럽 연합 회원국의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들은 7년 단위로 농촌 개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의 필요에 맞게 수립하여 유럽 연합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현재 회원국의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에서 수립한 2014~2020년 농촌 개발 프로그램 118개가 시행중에 있다(유럽 농촌개발 네트워크(ENRD) 웹사이트: 2017. 9. 11, <https://enrd.ec.europa.eu>)

〈표 2〉 외국의 사회적 농장 지원 주요 정책

구분	내용		
	관련 법	주요 지원	주요 재원
이탈리아	- 사회적협동조합법 (1991) - 사회적농업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보조	
		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유럽 연합 사회 기금
		국유지 사용 우선권	-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
네덜란드	- 장기요양법(2014) - 사회지원법(2014) - 청소년□□동법 (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1 (1999~2008)	농업부, 보건복지부
벨기에	-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제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농업부
		시설정비 비용 지원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 (2004~)	5개 주 정부
일본	- 장애인자립지원법 (2006) - 빈곤생활자 자립지원법 (2015)	시설정비 비용 지원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인력□□술 지원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후생노동성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주 1: 2009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던 돌봄농업지원센터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돌봄농업 협의회 단체에 이관했다.

5.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국내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살펴본다. 한국에서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몇 있다.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장은 자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전국 여러 곳에서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돌봄과 교육 분야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을 방문해 면접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가. 꿈이 자라는 뜰: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을 보살피는 사회적 농장[29)]

29) 여기에서 소개하는 “꿈이 자라는 뜰” 사례는 김정섭(2013)에 묘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013년에 관계자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매년 한두차례 면담하여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가 진행되던 중 개최했던 토론회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2017년 9월 22일, 서울AT센터)에서 소개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꿈이 자라는 뜰”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사회적 농장이다. 이 농장이 입지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는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는 20여 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홍동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늘공동체가 있다.

홍동초등학교와 홍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학교 특수교사들의 문제의식이 “꿈이 자라는 뜰”의 탄생 배경이다. 2004년 홍동중학교의 특수교사 L씨가 발달장애 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 밖으로 산책을 나오곤 했었다. 그러다가 풀무농업고등학교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 밖에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수업을 해보자는 아이디어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특수교사들은 ‘농업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위탁보호자 가정에 들어가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은, 자립적인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꿈이 자라는 뜰”을 창립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2009년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최초의 본격적인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면하게 되는 자립의 문제는 학부모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애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었다. 홍동초등학교 교사 H씨, 홍동중학교 교사 B씨, 풀무농업고등학교 출신 농민 C씨 등 몇몇이 초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늘공동체에 실습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교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학습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는 관내의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학교 육성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꿈이 자라는 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종료된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적 자립 능력을 키우고 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꿈이 자라는 뜰”이 도전하고 있는 과제다. “꿈이 자라는 뜰”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비전은, ①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직업 자립,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직업 자립’이라는 첫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꿈이 자라는 뜰”이 추진하는 주요 활동의 원칙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채소 화훼 과수 곡 등의 유기재배 농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자연과 벗하는 노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고른 신체 발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농업 생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두 번째 비전은 이 사회적 농장이 견지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 원칙과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에게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한다. 둘째, 사업 운영,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생산물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물망을 만든다. 셋째, 일방적인 교육과 지원 방식이 아닌, 마을 구성원 전체와 상호부조하고 서로 배워가는 방식을 만든다. 넷째, 장애인과 운영 조직이 개인의 인간성과 지역의 공동체성을 북돋우는 촉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꿈이 자라는 뜰”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은 매주 6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원예농업교실(초등학생 대상 꽃밭교실, 중학

생 대상 꽃나무 교실 1, 고등학생 대상 꽃나무 교실 2), 어울림교실(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목공교실(중고등학생), 풍물교실(초등학생) 등이 있다. '원예농업교실'은 텃밭과 농장에서 꽃, 나무, 허브, 채소 등을 직접 키우고 수확해서 요리를 해서 먹거나 상품을 만드는 학습 과정이다. 풀무농업고등학교의 텃밭과 온실, 자체' 농장 등의 실습지에서 진행된다. '어울림교실'은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산, 들, 내, 논길을 오랫동안 걷거나 강강수월래 같은 공동체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다. '목공교실'은 학생들이 지역에 소재한 갓골목공실에서 목수와 함께 필통, 수납장 등을 만들며 도구를 사용하고 나무를 만지는 법을 배우는 학습과정이다. '풍물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꿈이 자라는 뜰"이 홍동면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농업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하늘공동체, 홍성군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인 부모회, 지역의 장애학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우들의 교육과 실습에 이용되는 실습지(홍동초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하늘공동체 등)와 사무실(풀무농업고등학교 지역교육관) 등의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적자원으로 마을 주민교사들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보조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꿈이 자라는 뜰"은 아직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조직이다. 지금은 임의단체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향후의 목표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배운 직업능력을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취업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아마도 농장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학교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예산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실험적인 시도로서 "꿈이 자라는 뜰" 학생들이 생산한 허브 등 원예 묘종을 매년 5월 지역사회에 판매하고 있다. 이 판매사업에는 풀부학교생협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그 묘종 판매액이 500만 원 정도였다. 2017년에는 홍동 지역에서 규모가 크고 유력한 유기농생산자단체인 홍성유기농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묘종을 판매하였다.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꿈이 자라는 뜰"의 법인격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일을 처음 준비하던 2009년부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당시 토론에서는 풀무생협이 협동조합이지만 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받았고 풀무학교생협이 사회적 기업인 동시에 협동조합이고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을 갖추었듯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과 직원 인건비 등 경제적 자립 문제를 고려할 때 '협동적인 농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도 검토해볼 만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꿈이 자라는 뜰"은 지역 내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집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다.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맹아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장이라는 형태로 신체적·정신적 약자를 보살피는 지역사회의 조직적 활동이 출현한지 오래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수백 개의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꿈이 자라는 뜰"은 설립 과정과 운영 구조 두 측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전형적인 구조와 잘 들어맞는다.

나. 행복농장: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재활에 힘쓰는 사회적 농장[30]

농장은 크지 않다. 농지 1,000평 남짓에 올려 놓은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전부다. 여러 가지 허브와 꽃, 상추를 재배한다. 농작물을 돌보는 것이 농업이라면, 훌륭한 농민은 사람을 돌보는 데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농장은 스스로 제작한 자료에서, 농장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행복농장은 2016년 한해 동안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게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미혼모, 탈북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목공, 요리 등을 운영하는 '행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한해 동안 운영한 결과 2017년에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4박5일 간 진행되는 '일반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행복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농업 활동의 기초다. 한해 동안 2~3회 진행하는데, 매회 10~12명이 참여한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31]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기간 중 오전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농장의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저녁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에서 면담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 4명을 선정해 2주~3주에 걸친 '자연구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농업활동이 심화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건강 측면의 프로그램 비중은 줄어든다. 행복농장은 2016년에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들 가운데 3명을 고용하였다. 둘 중에 한 명은 인턴 자격으로 일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턴 급여를 지원한다.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농장에서 3명의 사회적 약자가 직업재활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이다.

30) 이하의 내용은 2017년 4월~6월 사이에 진행한 5차례의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연구가 진행되던 중 개최했던 토론회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2017년 9월 22일, 서울AT센터)에서 소개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31) 이하, '충남정신건강센터'로 줄여 쓴다. 몇 년 전에 장곡면에서 가까운 홍성군 홍북면에 충남정신건강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림 5〉 행복농장의 2016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개요

자연구시 프로그램 :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구분	교육대상	숙박	기간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목표
자연구시	1.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복지관 또는 기관 소속의 그룹 별 진행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1회 / 매주			10-15명	외부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3. 일반 자연구시	만성 정신 질환자	4박 5일	3회 / 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기관에 소속된 10명 선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4. 일반 자연구시 심화 과정	만성 정신 질환자	3주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심화 과정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중 선발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이수자 중 평가							
	5. 자연구시 인턴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 활동과 지역 활동 참여	회원의 의지, 농장평가,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자연구시 프로그램 같은 돌봄농업 실천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 행복농장의 실무 책임자인 최△△씨나 옆에서 항시 일을 돕는 젊은협업농장의 정□□씨는 정신과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농민이 진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 있다고 말한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들인데, 시설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할 일이 없는 이들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농장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재활 기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공장에서 단조로운 작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농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곳에 고용되어 일한지 1년이 지난 이를 보면 '처음보다 인상이 많이 환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사도 자연스럽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곁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럭저럭 농장을 차려놓고 농업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이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으니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행복농장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고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행복농장의 경험 그 자체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아주 초기 단계이며 숱한 난관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 그 중에서도 돌봄농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헌신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힘든 길을 걷는 일이다.

첫째, 농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다. 행복농장을 예로 들어보자.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전부인 이 농장의 규모로 볼 때, 최적의 노동력 투입 규모는 2명이다. 재배기술이나 마케팅 등 여러 조건이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비닐하우스 다섯 동에서 원예작물 재배는 부부가 가족노동으로 꾸려갈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남편과 부인이 일년 내내 하루종일 비닐하우스에서 일해야 대략 4,000만~5,000만 원쯤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규모다. 즉, 이곳에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농작업만 해야 한 가족이 먹고살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당연히 농업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2명에 농장 직원 1명이 곁붙어 보살펴야 한다. 인턴 등으로 고용한 이들의 농작업 속도나 양은 평균적인 농민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행복농장의 연간 농업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은 판로가 안정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돌봄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할애한 탓이 크다. 그 같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는 것도 아니다. 가령,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은 국가로부터 이러저러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대략 1인당 한달에 150만 원 정도다. 행복농장의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그 같은 요양급여 제도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충남정신건강센터가 조직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일 뿐이다. 이 프로그램은 홍성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토대로 운영되는데, 행복농장에는 '강사비' 항목으로 금전적 대가가 돌아온다. 참가자 수에 관계없이 1일 3만 원 정도다.

둘째, 시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비닐하우스 몇 동과 행복농장의 고정 인력 3명으로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여자 10여 명을 돌보기 어렵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행복농장에서 10명 이상이 동시에 농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들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행복농장에서는 두세 명만 농작업을 진행하고, 한두 명씩 다른 농장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장이 여섯 개쯤 된다. 오전에는 각 농장마다 한두 명을 배치받아 농작업 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시 모여 충남정신건강센터 측에서 나온 직원이 진행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농장에 고정 인력으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해 있는 상태가 이상적일 터이다. 언론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 농촌에서는 언감생심이다. 결국 지역의 사회복지 혹은 보건복지 분야 직능 종사자나 전문가와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인적 자원을 필요한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셋째,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이 단지 농업이라는 포장지를 둘러쓴 또 하나의 사회복지 시설일 수는 없다. 즉, 사회적 농장을 찾아오는 이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류일 수도 있고, 농장에 고용됨으로써 갖게 되는 직업적 관계일 수도 있다. 사회적인 경험은 재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농촌 마을 주민들의 상당한 이해와 용인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농장이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농촌 마을 공동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행복농장이 터를 잡은 농지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내 공간은 오누이권역 다목적 회관을 빌려 사용한다. 행복농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다. 행복농장은 경영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주변의 여섯 농장들이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를 받아 농업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지 않았다면, 행복농장의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제약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4박 5일간의 일정 동안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데에도 행복농장이 자리 잡은 마을 도산리 부녀회 등의 협력이 있었다.

다. 젊은협업농장: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농장[32)]

장곡면에는 "젊은협업농장"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이 있다. 홍동면에 있는 풀무학교는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졸업한 후에 농사 짓는 졸업생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이는 지역사회의 몇몇 사람들에게, 그리고 풀무학교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풀무학교를 나오든 홍동면으로 귀농을 했든, 농업에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농민으로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농사를 짓지 않느냐는 물음 앞에 돌아오는 대답은 '농사를 시작할 만한 자본이 없고, 농사를 지으면 먹고살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어릴 때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에 참여해 본 경험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은 아주 힘든 일이다.

지역사회 안에 '진짜 농장을 만들어 파종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농사를 배우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을 설립하게 된 문제의식이었다. 풀무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귀농 목적지가 되어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플랫폼이 필요했던 것이다.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사회 또한 젊은이들이 필요했다. 우여곡절 끝에 뜻을 같이하는 농민 몇몇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장곡면 도산리에서 땅을 빌리고 비닐하우스 서너 동을 만들어 쌈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지역에 튼튼하게 자리잡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도산리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젊은협업농장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들였고, 처음 시작할 때 영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었다. 도산리의 고령 농가들이 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젊은협업농장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역사회 외부에서도 든든한 도움이 있었다. 삼선장학재단의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는 '청년 인턴십 장학사업'이다.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한 청년 몇 명이 이 후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조합원은 45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합원 대부분이 홍동면과 장곡면 주민이라는 점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일꾼과 '교육생'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아니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진만 하더라도 풀무학교 이사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도산리 이장, 젊은협업농장 생산자(2명)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협동조합이다.

젊은협업농장은 2017년 현재 비닐하우스 8동에서 쌈채소를 재배한다. 농사에서 얻는 소득은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이지만, 대체로 7~15명 정도의 젊은협업농장 사람들(운영진과 교육생)이 농사짓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득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규모를 확대해 더 높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젊은협업농장은 고소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 수입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젊은협업농장의 기본 목적은 '돈을 많이 벌자'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기르자'는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에 들어온 청년들은 하루종일 농사일만 배우는 게 아니다. 농사일은 오히려 제한된다고까

32) 이하의 내용은 200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7차례 진행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연구가 진행되던 중 개최했던 토론회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2017년 9월 22일, 서울AT센터)에서 소개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지 말할 수 있다. 오후 4시를 넘어서면 농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 이후 시간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현재 11명의 신규취농 준비자가 젊은협업농장에 머물고 있다. 20대 연령층이 6명, 30대가 3명, 50대가 2명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젊은협업농장을 나온 후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농장일을 하면서 인근의 장곡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나서는가 하면, 젊은협업농장이 소재한 도산리 일대 권역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무장 일을 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방문객이 많은 홍동면과 장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한, 지역 안내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자본이 아주 풍부한 대농의 영농 승계자라면 영농기술과 농업경영체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면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로지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밑천"일 뿐인 청년 소농에게 마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도시의 월급쟁이에게도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농촌 생활에서 그 중요성은 차원을 달리한다. 직장인은 몸만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농민은 몸뚱이만 있다고 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토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모조리 내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빌려야 한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도 이웃 농민에게 얹혀서 팔아야 할 때가 잦다. 그럴려면 인간관계와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 같은 관계의 밀도는 대면접촉 빈도에, 즉 이웃과 어울린 시간에 비례한다. 청년 농민이 이웃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접촉하느냐는 문제는 뜻밖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은 농사일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마을 행사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과 마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정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교육이 진행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젊은협업농장의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다. "유기농업", "역사인문학", "기초화학", "유기재배의 기초와 실제", "지역의 이해" 등 7개의 강좌가 매주 1회 진행된다. 즉, 날마다 강좌 하나를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홍성군 주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평민지역학교"라고 이름 붙였다. "평민지역학교" 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포스터의 문구는 젊은협업농장이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잘 드러낸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젊은협업농장 단독의 역량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협동조직들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 이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는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청년농부작업장 온', '홍동밝맑도서관',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등이 관여한다.

〈글상자 5〉 '평민지역학교' 강좌 안내 포스터의 문구

> 원래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조육'助育이면서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이웃공동체의 관계와 테두리를 깊고 건강하게 넓혀가는 '공육'共育입니다.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는, '이촌위교'以村爲校(마을이 학교가 된다)의 평민지역학교는 교육의 장소를 온 마을에 열고, 모든 주민이 일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평생 종교, 사상, 생태, 농업, 복지, 지역, 문화 등 넓은 범위를 서로 공부하면서, 평생 배우고 일하고 협력하는 지역, 돈과 경쟁이 아닌 흙과 공동체의 가치를 한걸음씩 구체화시키는 지역을 평민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젊은협업농장에서 1~2년 일하고 배운 청년들이 모두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도시

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농민으로 정착하는 경우에는 젊은협업농장의 조합원이 되어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지역 주민'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 정착하기는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라. 여민동락 공동체: 농촌 노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직[33]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은 전형적인 인구 과소화 농촌이다.[34] 면 인구가 2,000명 남짓,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변변한 상점이나 음식점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주민 절반이 노인이다. 십 수명의 사람들이 10년 전 묘량면에 귀농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복지 실천가였고, 그들이 지닌 농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여민동락 공동체 활동의 씨앗이었다.

2007년에 귀농한 이들은 휴경지를 임차하여 밭농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영광군 관내 11개 읍면의 농촌복지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들의 활동은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에는 농업활동이 결부된 것들도 있다. 여민동락 공동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관련된 이들이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008년에 작성한 '여민동락 설립 정신'이 소개되어 있다. 설립 정신은 5개 조항으로 표현되는데, 다섯 번째 조항에는 주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되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 농업을 거론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있는 귀농인들이 '동락원'이라는 이름의 협업농장을 운영하였다. 지역의 노인들이 내어놓은 휴경지를 토박이 주민들과 함께 경작하였다. 모시풀, 콩 등 '모싯잎 송편'[35]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작물들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작목 선정은 모싯잎 송편 가공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싯잎 송편 공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묘량면에 거주하면서 거동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취업해 일하고 있다. 노인들 중에는 모싯잎 재배 작목반에 속해서 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는 묘량면사무소 소재지에 마련한 주간보호센터[36]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도 묘량면에 생필품을 구매할 상점조차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 생필품 구매 협동조합'인 '동락점빵'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동락점빵'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33) 이하의 내용은 2017년 5월에 진행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연구가 진행되던 중 개최한 토론회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 (2017년 9월 22일, 서울AT센터)에서 소개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34) 한국 농촌의 1,200여 면 지역 평균 인구는 약 4,000명 내외다.

35) 영광군의 특산물이다.

36) 이 주간보호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다.

〈글상자 6〉 여민동락 설립 정신

1. 여럿이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건설
억압과 소외와 빈곤이 없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실천에 동참한다.
2. 농촌복지를 통한 생명공동체 실현
우리 삶의 원류이자 민족생존의 뿌리인 농촌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살리고, 21세기 농촌복지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위해 연대한다.
3. 지역복지와 노인복지의 한국적 모델 연구와 복지교육 실천
노령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노인복지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환경을 조성, 열린복지를 위한 복지인 양성과 교육에 주력한다.
4.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복지의 인간화와 전문화 구현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조건과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복지활동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도모하고,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한 복지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5. 지역일체형 자립적 지역복지 공동체를 위한 유대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기관과 지역이 한몸을 이루는 지역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나아가 지역의 인적자원과 문화적 자산, 유관기관 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료: 인터넷 까페, 여민동락공동체(http://cafe.daum.net/ym3531141)

여민동락 공동체의 다각적인 실천 가운데 노인에 초점을 둔 활동은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농업 활동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 또한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민동락 공동체의 대표 실무자인 권○○씨는 그런 활동들의 취지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귀촌해서 1년 반 정도 지역 조사를 했어요. 노인 복지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찾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설립을 했죠. 노인복지시설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시설로 지정이 되었죠.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모시다가 장기요양보험 시설로 지정되서 등급자들도 함께 모셨죠. 무료로 하면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요. 등급은 못 받았어도 병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무료로 모시는 거죠. 근데 병증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환경을 같이 봐요. 경로당이 없거나 멀어서 못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자 중에 마을이 소규모고 멀리 나가지 못해서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모셨어요. 지역 사회 조건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협력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너무 외롭거든요. 보호자들 동의를 받아서 모셨어요. 그렇게 처음에 1년 간 운영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지역사회 어르신들 중에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이러한 시설을 거친 후에 나중에 증상이 심해져 요양병원을 가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살다가 요양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을에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려고 한 거죠.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에 보면 건강, 빈곤, 고독과 같이 노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노인보건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고 매우 건강하고 잘 살아 그러면 큰 도움이 필요 없죠. 빈곤하면 돈이 필요해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외로움, 고독과 관련하여 정서적 도움을 주려면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건데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마을에서 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자리 증진 사업을 한 것은 빈곤과 관련해서 한 것인데 떡집하고 작목반을 만들었죠. 그게 지역 차원이었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마을에서 본인이 하는 일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 조사에 따라 50만 원 이하 수준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그게 모시떡인데 모시가 쉽기 때문에 추진하였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분들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죠. 마을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다가 했던 것이 품앗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일주일에 한번 씩 경로당으로 모셨죠. 어르신들이 마을 주민들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해결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도 자원봉사하고 여러 활동을 했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11년 차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떡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달 평균적으로 28~35만 원 정도 급여를 가져갔어요. 작목반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 12만 원에서 32만 원을 챙겨가세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고 구체적 근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죠. 어르신들마다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수입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요. 인터뷰를 했는데 빈곤하지 않지만 무료해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할 일도 없고, 땅도 별로 없고. 소일거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용돈도 돼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작목반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나는 참여해서 우리 동네 언니들 돈 좀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와요. 이렇게 무료함, 빈곤, 사명감 등이 섞여서 해요.

작목반 전체 인원은 30명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나와요. 경지는 휴경지를 무료로 임대한 것도 있고, 길목 좋은 데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있죠. 경제적인 부분이죠. 초창기에는 모시잎이 비쌌어요. 1kg당 7,00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워낙 떡집이 많이 생겨서요. 그러다보니 이걸 팔아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추, 양파, 마늘, 보리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작목반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농한기에 일이 없으면 소득이 안 들어오니깐 밭을 놀리지 말고 1달에 10~20만 원도 괜찮으니 밭을 돌리자라고 했어요. 농약을 뿌리거나 하지 않고 겨울에는 풀을 안 매니 심어놓고 쭉 기다리면 되니까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속 가냐 마냐 고민이죠. 떡 공장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다른 떡집에도 납품하죠. 기존에 납품하는 떡 공장을 운영하는 어르신이 나이 드시면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줄었거든요.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이죠.

- 2017년 6월, 여민동락 공동체 권○○씨와의 면담 내용 중에서

마. 교남어유지동산: 농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및 자립을 이루어낸 복지기관

교남어유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에서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다. 교남재단은 한 사람의 장애인이 태어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노후의 삶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교남어유지동산은 청·장년기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다. 다양한 직업적응훈련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직접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사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직업재활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4만여m^2 의 부지에서 각종 채소류 등 식용작물을 재배한다. 일부 품목은 가공을 하여 판매한다.

교남어유지 동산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발달장애인 35명이 있다. 이들은 연고자와 무연고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연고자란 지역에 있는 자신의 본래 가정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를 말한다. 무연고자는 가정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들이다. 현재 35명 중 14명이 무연고자이다. 교남어유지동산은 이들의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하는데, 이는 '공동생활가정'보다 앞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 집을 얻어주는 게 공동생활가정이다. 장애인들도 자기 소유의 집과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이 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장애인 대부분은 인터넷, 관공서 게시판 광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이 곳을 알게 된다. 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접도 보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평가 도구를 가지고 체크를 한다. 그 후 3주 정도 훈련 기간을 갖고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다. 매월, 반기, 연간으로 직업 숙지도 등을 점검하고 상담일지도 작성한다. 주목할 점은 퇴근 후에도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다. 교남어유지동산에서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장애인을 돌봐주는 조력자 역할을 맡긴다.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어떻게 농업을 시작했는지는 현재 대표자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절박함이었어요. 우리 법인은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 등을 졸업한 청·장년층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직업·재활 쪽으로 훈련을 시켜보자 생각했고, 화곡동 주변에 임대농지가 있어서 시작했죠. 해보니까 될 것 같고, 지적 장애인들에게 흙을 만지게 하는 것이 좋았고, 농업이 평생 직업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장애인분들이 신체적·정신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생산성은 적어도 이 친구들이 건강해지고 폐쇄적인 성격에서 밝은 성격으로 바뀌고. 이거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초기 구성원 5~6명이서 생각했어요.
>
> - 2017년 5월, 교남어유지동산 대표 권□□와의 면담 내용 중에서

교남어유지동산이 처음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직업이 없는 청·장년 장애인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자 하는 절박함이었다. 수입은 낮아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흙을 만지는 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농촌은 녹록치 않았다. 본격적으로 농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처음 강화도에 터를 잡았는데, 마을 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쫓겨났다. 그래서 파주로 옮겨 오게 되었다. 여기서도 주민들의 텃세가 심해서 전임 원장이 관(官)의 도움도 받고, 주민들을 방문하여 설득했다. 차츰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 강화도로 갔는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설득 작업도 했지만 쫓겨났죠. 다시 갈 수는 없고 파주로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촌은 텃세가 많아서 외지인들이 뿌리내리기 힘들어요. 우리 법인이 예전에 미혼모를 돕는 복지시설이었다보니, 초창기에는 의미가 와전되서 윤락 여성 시설이라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전임 원장님들이 먼저 관을 설득했죠. 면장님들도 많이 만났고,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득했어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일들만 한다는 등 이런 약속을 해서 조건부로 시작을 했고. 그동안 문제없이 잘 적응했어요. 이곳 주민들도 이제야 이해를 해줘요.
>
> - 2017년 5월, 교남어유지동산 대표 권□□와의 면담 내용 중에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일이었다. 장애인들이 종교활동,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모은 헌금을 지역의 노인분들, 어린이들의 생활비로 대주는 것이다. 그 외에 TF를 구성해 장학사업도 하고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도 한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시선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외에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다보니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토착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니 마을 대소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농업경영인협의회와 협력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교남어유지동산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6차 산업화 관련 정부 사업도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교남어유지동산으로 가지고 오면 가공을 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러한 협업으로 지역 주민과 교남어유지동산이 상생하자는 것이 목표다. 작년에는 1차로 호박즙 사업을 성공하고, 올해는 2차로 블루베리 착즙 사업을 했다. 그리고 3차로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다.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로 담아서 지역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인데, 자연스레 전국에 홍보되고 있다. 앞으로 목축뿐만 아니라 과수, 양계와도 단계적으로 연계를 할 예정이다.

지역에 젊은 사람은 적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 노인들은 농업 쪽에는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유통, 가공 분야에는 취약하다. 교남어유지동산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 6차 산업(농장 체험, 마을 기업 등)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제의를 받기도 한다. 이 외에 차나 기계·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가끔씩 인력 지원도 한다.

마을 주민과 농업으로만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은 여러 교류 통로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기관들과도 연계하고 있다. 면사무소, 지역의 다른 사회적 기업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교남어유지동산이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지역주민에게 농사를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기관 내 영농사업단도 지역 농업인들로 구성을 했다. 지역마다 토질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들을 초빙해서 같이 일하며 교육받는다. 이 지역 농업인들이 일한 지 벌써 15년이다. 이 분들은 본인 농장을 따로 가지지 않고, 교남어유지동산의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교남어유지동산은 대규모 농사,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서 교남어유지동산의 작업장 형태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곳은 보호작업장이 아니라 근로작업장으로 운영된다. 보호작업장은 구성원이 10명 이내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근로작업장은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지원받는 것에 비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많다. 그래서 보호작업장들은 대부분 근로작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려 한다. 일례로 어떤 회사는 직원수가 80명이 넘고 연매출 100억원이 넘어도 근로작업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호작업장으로 남으려 한다. 지자체에서 전환 권유를 해도,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남어유지동산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근로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다.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느 해는 풍년이지만 다른 해는 가격이 폭락하기도 한다. 중간 유통 과정상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최저임금 맞추기가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20년 간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교남어유지동산은 농업 외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생산 활동 외의 수입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의 일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우리는 22년 째 근근이 버텼어요. 농업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구책을 마련해보자고 6차 산업도 하고 있고요. 생산만으로는 안 되니 커피 로스팅도 하고.연 중 계속 할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조업이나 가공식품 쪽도 생각해요. 남들은 부가가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처음에는 성과가 안 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특화를 시켜보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과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기업 논리와는 안 맞죠.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채용할 수가 있고 좋은 서비스를 연결하고 선순환이 되는데.
>
> - 2017년 5월, 교남어유지동산 대표 권□□와의 면담 내용 중에서

이곳 교육 방법도 독특하다. 수습 기간에 비닐하우스팀, 노지팀, 판매팀, 급식팀, 게스트하우스팀으로 나뉘어 순환해가며 교육받는다. 그 후에 흥미와 적성을 반영하여 가장 어울리는 곳을 찾고 노사간 협의도 한다. 이 외 매점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경제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앞으로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비장애인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처럼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쓰는 로컬푸드 식당을 만들고, 까페도 더 예쁘게 만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뷰포인트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10년 장기 비전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의 농사를 오랜 기간 짓고 있고, 지금은 농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익을 보충하려고 다른 활동들도 모색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법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 대표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개인 농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업법인이 아니라서 못 받는 지원이 많아요. 사실 불이익도 많았어요. 농자재라든지. 원장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복지법인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를 좀 인정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20년 이상을 농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민이에요. 인건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
> - 2017년 5월, 교남어유지동산 대표 권□□와의 면담 내용 중에서

6. 결론: 사회적 농업 정책의 방향에 관해

사회적 농업이 무엇이냐는 논의조차 충분치 않은데,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개념화되고 있는 농업 실천이 한국에서도 조금씩 출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농업과 사회의 이격(離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모든 종류의 농업 실천'이라고 아주 폭넓게 정의하면, 적어도 정책 측면에서는 실용적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혹자들이 제시하는 견해처럼 '돌봄 농업 = 사회적 농업'이라는 등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농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긴요한 과제다. 유럽의 경험이나 한국의 몇몇 사례를 참고한다면,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통합,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농업 형태를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회적 농업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농업의 특징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열쇳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특징을 '사회 통합',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의 세 열쇳말로 요약하자고 제안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의 기원인 유럽이나 국내의 여러 실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본 목적이 '사회 통합'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때의 사회 통합은 파슨즈(T. Parsons)의 사회체계 이론에서 보이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이고 거시적인 범사회적 통합(societal integration)을 뜻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경험적인 성과를 낳는 통합(inclusion), 다양한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정 형식으로서의 연대를 뜻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의 조건이자 지향이 사회 혁신에 있다는 점은 유럽의 사례에서 누누이 강조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정책 문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용어로서 사회 혁신이 사회적 농업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한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부분을 지향해야 할지를 잘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몇 개의 국내 사례들도 모두 농업인들만의 노력으로 진행된 사례가 아니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 사례들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농촌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새로운 관계, 즉 농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실천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농업 생산 단위가, 특히 개별 농가가 일상적으로 생산하던 농업 생산물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사회적 농업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왜곡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농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전개한다면, 그 위상은 농외소득 증진 정책이 아니라 농촌 정책이라는 배경 위에 놓여야 한다. 혹은,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메뉴들 가운데 하나로 추가되는 메뉴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

앞서 소개한 국내 사례들 모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일련의 협동적 조직 형식을 전제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했다는 점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유럽의 사례들에서 네덜란드 등의 몇몇 국가에서는 개별 농가 단위의 사회적 농장이 적지 않으며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농가 현실에서는 그것을 전범으로 삼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개별 농가 여건의 일반적인 열악함(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농가 단위로 시설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자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참조한다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의 기원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최근에는 농촌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협력 구조를 조직하기 시작한 아일랜드 사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출현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사회적 경제라는 맥락에 사회적 농업을 정위(定位)하는 게 타당하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관심이 최초로 표명된 시점이다. 어쨌든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은 사회적 농업 실천이 두텁지 않으므로, 정책 방향의 골간을 형성하는 게 중요할 테다.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농업 정책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폭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실제로 접근해야 할 영역을 넓게 잡을수록 실행 가능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기존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가령,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 실천을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농업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 농업 영역에서 실천 주체들이 활발히 나서도록 촉진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일 텐데, 어떤 주체를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 사회적 농업을 개별 농가들이 실천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 주체의 협력을 전제로 지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농가의 물적 여건이 불비(不備)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덜란드처럼 개별 농가의 사회적 농장 경영을 주요 모델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단언키는 어렵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농업 주체 형성 전략이 적실할 듯하다. 물론 사회적 농업 주체 형성을 돕는 정책은 어떤 내용이 되든, 다른 분야의 여러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체들의 자발성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농업이 낳는 편익은 대부분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즉,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시장 상품이 아니라 공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 자주 소개되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돌봄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된 데에는 실천 주체들의 헌신과 노력 외에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이 체계화시킨 것이 한몫을 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필경, 언젠가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제도와 연계, 조정, 통합 등의 시도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회혁신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그 같은 제도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제도 정비의 완급 문제가 있다. 사회적 농업이 일정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확산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드러나는 실천의 두께를 고려해 법제 정비의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 실천은 박약한데 지원 정책만 성급하게 추진해서 알묘조장(揠苗助長)의 결과가 되거나, 대상자는 몇 되지 않는데 복잡한 자격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서 실효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숱하게 경험한 바 있다.

〈참고문헌〉

김정섭. (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조미형. (2013). 농어촌의 지역사회복지와 협동조합: 체계와 생활세계를 가로질러. **농어촌복지연구, 11**, 1-23.

김형용. (2013).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와 사회복지관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찾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169-195.

보건복지부. (2017). 20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 5. 30. 시행).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복지법 (2017. 9. 19. 시행).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 10. 13. 시행).

송미령·김정섭·김광선·박주영. (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악셀 호네트. (2011).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 책.

안규미. (2016).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195**, 9-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규미. (2017). 독일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197**, 9-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마상진·김광선·김창호·권인혜. (20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해.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사례,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미간행.

이정해. (2017). **사회적 농업 국외 사례 조사: 네덜란드, 이탈리아, 2017년 2월 해외출장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간행.

이혜진. (2016). 영국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196**, 9-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준홍·김양중·송두범·김종수·이관률·허남혁. (2011).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영현·임송수. (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196**, 27-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厚生勞働省·農林水産省. (2017). 福祉分野に農作業を (支援制度などの案內, Ver. 5).

Assouline, G. (2015). *The French social farming model under pressure: The role of a territorial network like ASTRA*. Paper presented in AgUrb 2015 Conference. Roma.

Ballyhoura Rural Services. (2015).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a Social Farm in the Ballyhoura Region: A Feasibility Study*.

Barry, B. (2002). Social Exclusion, Social Iso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rd(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S. R. (1998).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Q Methodology in Psych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ent State University.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2011).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Chovanec, T., Hudcová, E., & Moudrý, J. (2015). *Social Farming: A document prepared in the frame-work of the Working Committee for Social Farming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Czech Republic.

Crowley, C., O'Sullivan, S., & O'Keeffe, B. (2017). *An Evaluation of Kerry Social Farming 2017.* Ireland: 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

European Commission. (2010). *Overview of Social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health policies'*. Brussels: EESC.

FAO. (2015). *The Implications of Social Farming for Rural Poverty Reduction*. Technical Workshop Final Report. Rome.

Fazzi, L. (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Ferre, F., Guilio, A., Valerio, L., Longhi, S., Lazzari, A., Fattore, G., Ricciardi, W., & Maresso, A. (2014). Italy: Health Syt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16(4), 1-168.

Goris, K., & Dessein, J. (2007). *Social Farming in Flanders and Belgium.* SoFar Project.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NewYork: Beacon Press.

Hassink, J. (2007). *Social Farming in the Netherlands*. SoFar Project.

Hassink, J. (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F. Di Iacovo and D. O'Conne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Hassink, J., &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across Europe: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and recommendations for a research and policy agenda. J. Hassink and M. Van Dijk(eds.).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rdrecht: Springer.

Iacovo, F. D., & D. O' Connor.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Iacovo, F. D., & Peroni, P. (2006). *Between Agriculture and Social Work, Non for Profit and Entrepreneurship.* SoFar Project.

Iacovo, F. D., Moruzzo, R., Rossignoli, C., & Scarpellini, P. (2014). Transition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Lessons from Social Farm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327-347.

Istat. (2007). *Le cooperative soiali in Italia..* Rome: Istat.

Kroneman, M., Boerma, W., van den Berg, M., Groenewegan, P., de Jong J., & van Ginneken, E. (2016). Netherlands: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18(2), 1-239.

Leck, C., Evans, N., & Upton, D. (2014). Agriculture – Who cares? An investigation of 'care farming' in the UK. *Journal of Rural Studies,* 34, 313-325.

Mipaaf(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alimentari e forestali). (2015a). *La mappa degli Operatori*

dell' Agricoltura Sociale.

Mipaaf(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alimentari e forestali). (2015b). *Agricoltura sociale I dati generali.*

Mipaaf(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alimentari e forestali). (2016). *L'Agricolutra sociale nella normativa regionale Italiana.*

Ploeg, J. D. van der. (2008). *The New Peasantries: struggles for autonomy and sustainability in an era of empire and globalization.* London: Earthscan.

Rachel Bragg. (2013). *Care farming in the UK - Key Facts and Figures*. University of Essex

Scuderi, A., Timpanaro, G., & Cacciola, S. (2014). Development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the EU-2020 Strategy. *Quality-Access to Success,* 15(139), 76-82.

Shucksmith, M., & P. Chapman. (1998).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Exclustion. *Sociologia Ruralis,* 38(2), 225-242.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The University fo Chicago Press.

Steunpunt Groene Zorg. (2017). Jaarverslag 2016.

네덜란드 농업·건강 연맹(www.landbouwzorg.nl).

벨기에 공식 정보 제공 웹사이트(www.belgium.be/en/about_belgium).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 웹사이트(www.agricolturacapodarco.it).

유럽 농촌개발 네트워크 웹사이트(https://enrd.ec.europa.eu).

유럽 다기능농업 프로젝트 웹사이트(http://www.maie-project.eu).

위키피디아(캠프힐)(https://en.wikipedia.org/wiki/Camphill_Movement).

이탈리아 통계청(https://www.istat.it/en).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 법령 정보(https://www.cliclavoro.gov.it/Normative).

파라다이스 농장(http://hetparadijs.net).

플란더스 녹색 돌봄 지원 센터(www.groenezorg.be).

CIA(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l.html)

Reseau Cocagne(http://www.reseaucocagne.asso.fr)..

SoFar(http://sofar.unipi.it/index.htm).

제주지역 사회적농업사례:
결혼이주여성의 아열대채소 재배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홍 창 욱 | 공심채농업회사법인 대표


과거
현재
미래
공심채 창업사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과정
홍창욱 2018.10
Prezi


공심채농업회사법인(주) 연혁
• 2017년 제주형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지원 프로젝트 선정
• 2018년 제주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 2018년 8월 농업회사 설립
• 2018년 9월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드펀딩 100% 달성
• 2018년 11월 농림부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목표
YouTube
Prezi

농업회사 창업의 배경

- 8년간 마을기업 근무하며 육아병행
- 자산 : 농업농촌 출신, 미디어 전공 / 외부 네트워크
- 어려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내 시장부재
- 기회 : 지역 농업의 변화






Prezi

창업 아이템

- 가설:아열대기후로 변화하는 제주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고향채소를 함께 길러서 판매한다면 그들의 행복증진은 물론,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Prezi


과거
현재
Prezi


아이디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사회적경제분야 멘토활용
• 2018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수상
• 지역의 다문화센터 설명회, 이해관계자 설문
• 전국의 산지, 유통상 시장조사
Prezi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핵심 이해관계자 : 결혼이주여성 포함한 취약계층,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 사회적경제영역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교류





Prezi

생산분야에서 남는 한계들

- 공시지가 2.5배 상승
- 농지 임대의 어려움
- 다양한 판매경로 부재
- 청년진입 기피현상





Prezi


현재
미래
Prezi


농업의 미래를 물어본다면?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 지역, 시민과의 연결
• 씨줄날줄의 중요성, 기획자와 촉진자의 역할
Prezi

농업의 미래를 물어본다면?

- 자연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농업
- 학습하고 활동하는 조직





Prezi

농업의 미래를 물어본다면?

- 다양한 계층 참여하는 지역농업네트워크
- 다양한 수익 창출하는 복합영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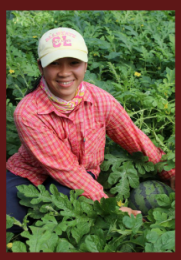

Prezi


현재
미래
Prezi


과거
현재
미래
공심채 창업사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과정
홍창욱 2018.10
Prezi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1

정 민 철 | 협동농장젊은협업농장
이사

MEMO

MEMO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2

황 석 규 | 제주사회적농업연구원
설립추진위원장

MEMO

MEMO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3

강 종 우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MEMO

MEMO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4

안 경 아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MEMO

MEMO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5

김 경 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MEMO

MEMO

사회적농업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6

이 우 철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국장

MEMO

MEMO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2018. 10. 1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 혜 영 사무관 김 경 은	044-201-1571 044-201-1572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지원부	부 장 김 기 진 대 리 김 경 동	031-8084-9561 031-8084-956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	540	1,080	계속
국 고(70%)	-	378	756	계속
지방비(30%)	-	162	324	계속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1)의 활동을 취약계층과 함께 할 것

*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 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단,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업의 '18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19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예정인 마을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 동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민·조직·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 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 건강증진센터·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융화 유도

·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8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19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단,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19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18년도 시범사업자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18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19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19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19년도에도 지속 지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국내외) 학습·견학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종사자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대상자(취약계층)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자격 요건 무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취약계층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취약계층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냉・난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포함)
-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19년도 신규신청자)

사업 공모 및 수요조사 농식품부→ 시·도(9.20)	→	사업 수요 제출 시·도→ 농식품부(10.4)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신청자→시·군 (~11.9)
사업자 적격심사·제출 시·군→시·도→ 농식품부(11.16)	→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11월중)	→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농식품부→시·도 (12월/'19.1~2월)

2.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19년도 사업 수요 조사 진행(9.20)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을 통해 시·도별 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4)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10월초)

《'19년 신규신청자》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1.9)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11.16, 기한 엄수)

《'18년 기존사업자》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19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7일까지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12월중)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는 (1차)서류심사(11월중), (2차)현장심사(11월말~12월초), (3차)발표심사(12월중)를 거침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12월)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19.1월)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19.1~2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19.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조직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별도 마련 예정)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1.15)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20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별지 제1호 서식]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업 체 명</td><td colspan="2"></td><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소재지</td><td colspan="5">(주소)</td><td>자본금</td><td>백만원</td></tr>
<tr><td colspan="4">(전화번호)</td><td colspan="3">(E-mail)</td></tr>
<tr><td rowspan="3">설립일자</td><td rowspan="3"></td><td>(조합원 등)
구성원수</td><td>명
(농업인 명)</td><td rowspan="3">상시
고용인원</td><td>’16년</td><td colspan="2">신규고용 명,
누적 명</td></tr>
<tr><td rowspan="2">구성현황</td><td rowspan="2">사회복지사 1,</td><td>’17년</td><td colspan="2">신규고용 명,
누적 명</td></tr>
<tr><td>’18년</td><td colspan="2">신규고용 명,
누적 명</td></tr>
<tr><td>조직 형태</td><td colspan="8">☐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td></tr>
<tr><td>사업 유형</td><td colspan="8">☐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td></tr>
<tr><td>활동 참여자</td><td colspan="8">아동( ), 청소년(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td></tr>
<tr><td>외부기관
(단체) 연계</td><td colspan="4">(기관・단체명)</td><td colspan="4">(협력내용)</td></tr>
<tr><td>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td><td colspan="8">☐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td></tr>
<tr><td colspan="9">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9">※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td></tr>
</table>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별지 제2-1호 서식](* 신규 사업 희망자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서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18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19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0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1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2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3.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 ‘17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0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 ‘19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샵,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18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4,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4,000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8,000**	

[별지 제2-2호 서식] (* 계속사업자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18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19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0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1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2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2.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3.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 '17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0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 '19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샵,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예시)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4.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18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5. 예산 집행 계획(예시)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4,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4,000*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8,000***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4. 사업대상자(취약계층)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대상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축되고 마을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예산 집행의 적절성)

○(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비 고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2. 사업 주요 성과

○

*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3. 시·도 평가 결과

○ 총평

○ (시군청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

○ (사업에 따른 영향 등)

4. 건의사항

○